##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병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620

발의연월일: 2021. 9. 17.

발 의 자:서병수・강기윤・구자근

서일준 • 양금희 • 윤영석

윤창현 • 이명수 • 정희용

조경태 · 최형두 의원

(119]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 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,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음.

그런데 보행자의 횡단보도 통행 시에만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 대한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보행자를 소극적으로 보호하는 태도이며, 보다 폭넓은 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횡단보도를 통 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도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자에 대한 일시정지 의무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여, 횡단보도 상에서의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27조제

1항).

법률 제 호

###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1항 중 "통행하고 있을"을 "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7조(보행자의 보호) ① 모든	제27조(보행자의 보호) ①
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	
보행자(제13조의2제6항에 따라	
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	
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	
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)가	
횡단보도를 <u>통행하고 있을</u> 때	<u>통행하고 있거나 통</u>
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	<u>행하려고 하는</u>
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	
그 횡단보도 앞(정지선이 설치	
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	
을 말한다)에서 일시정지하여	
야 한다.	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